

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10 ~ 2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0. 6. 29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○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‘사회적기업’의 설립 및 육성·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‘예비사회적기업’의 설립 및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.

나.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기능

-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
-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-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-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

- 위 원 장 : 부군수
-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 원
 - 당연직 : 주민생활지원과장, 경제과장
 - 위촉직 : 군의회의원,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,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

다.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
○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며, 해당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

라.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육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마.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시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.

-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의 지원·융자, 국·공유지 임대 및 불용품 무상양여 등 시설비 등의 지원
- 경영·법률·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경영지원
-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민간 소비 장려 등의 판로 개척
-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
-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 장려
-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동 추진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·육성 참여 확충을 위한 민간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
-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

바.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).

-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경비·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사.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반환, 보고 및 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12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

나. 예산조치 : 2010년 추경예산으로 확보(50백만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, 주민생활지원과, 재무과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(2010. 6. 9. ~ 6. 29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기업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.
2. “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,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·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”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.
4. “사회서비스”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5. “연계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)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3. 제13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4.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, 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
2.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

3.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
2.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5. 육성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
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육성)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,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·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설비 등의 지원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
제7조(경영지원 등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퇴직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방세 감면)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및 「거창군세 감면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)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제11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의 구축·운영 지원
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
3.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

제12조(홍보 등)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
3. 전문가 포럼,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

제13조(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경비·자문비용 등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의 선정,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반환) ①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관계 법령의 규정,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,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위반한 때 또는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.

제15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실적, 향후 사업계획, 수입·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·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